

## 외국어능력졸업인증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54조의 2에 의거하여 영어 또는 중국어능력(이하, 총칭하여 ‘외국어능력’이라 함) 졸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5.03.18.)

**제2조(적용)**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2009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편입생의 경우에는 2009년도 교과과정(명칭변경 2015.08.28.)을 이수하는자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외국어능력졸업인증자격)** ①외국어능력졸업인증은 대학 및 학과(부)에서 일정 이상의 외국어능력 졸업인증 자격기준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학과에서 정한 일정 이상의 자격기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총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2.08.10, 2015.03.18.)

②외국어능력졸업인증자격 관련 시험은 본교 재학 기간에 응시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한다. (개정 2012.08.10, 2015.03.18.)

③전부(과)한 학생의 경우에는 전부(과)한 학과(부)의 외국어능력졸업인증 자격요건을 적용한다. (개정 2015.03.18.)

**제4조(대체인정)** 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프로그램 중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를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대학 및 학과(부)에서 정한 기준에 달한 경우 외국어능력졸업인증 자격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03.18.)

**제5조(외국어능력졸업인증 신청절차)** ①본 대학 재적기간 중 외국어능력졸업인증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능력졸업인증 신청서에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관련서류를 글로벌캠퍼스는 국제어학원, 메디컬캠퍼스는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졸업에 달하는 학기의 경우에는 졸업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03.18., 2019.03.28)

②접수부서에서는 자격 취득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과 대조·확인한다. 메디컬 캠퍼스 각 행정실은 외국인능력졸업인증 자격 취득자 명부와 관련 서류를 국제어학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03.18., 2019.03.28.)

3-3-18~2 제3편 행 정

③외국어능력졸업인증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. (개정 2015.03.18.)

④(개정 2015.03.18., 삭제 2018.08.23.)

**제6조**(외국어능력졸업인증 미취득자 처리) ①외국어능력졸업인증으로 학위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로 인정하며, 수료 이후의 기간은 재학연한에 통산한다. (개정 2015.03.18.)

②제1항의 수료자가 재학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적 처분 후 수료증을 수여한다.

**제7조**(인증면제) ①학사편입생, 군위탁생, 특례에 의한 편입생, 귀순동포,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능력졸업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. (개정 2015.03.18.)

②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복수전공학과(전공)의 외국어능력졸업인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5.03.18.)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영어능력졸업인증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, 2008학년도 이전의 졸업인증 적용대상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③(졸업인증 적용에 관한 사항) 제2조에 의하여 영어능력졸업인증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대학 및 학과(전공)에서 종전의 졸업인증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.

④(삭제 2018.08.23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